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에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11월 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에게 청남대 입장료 면제혜택 조항을 신설하고, 청남대 체험·연수시설의 시설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청남대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의 입장료 면제(안 제4조제10항)
- 본관 내부촬영 기본료 조정, 강당·세미나실 등 사용료 조정(안 별표3)

4. 검토의견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충북도민대상 수상자 및 명예도민이 충청북도에서 운영 중인 청남대에 입장할 경우 입장료 면제혜택을 부여하여 예우하고, 청남대 시설사용료를 1일 단위로 부과하였던 것을 시간단위로 부과하여 보다 많은 이용자가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